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최 승 은

## I. 회의 개요

###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2실무작업반은 중재·조정 및 분쟁해결(Arbitration and Conciliation/Dispute Settlement) 법제 마련을 과제로, 신속중재에 관한 규칙(Provision on Expedited Arbitration)을 만들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하였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72차 회의는 2020. 9. 21.부터 25.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Venter)에서 안드레스 야나(Andres Jana, 칠레) 의장 주재 하에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2. 회의 결과 요지

제72차 회의는 UNCITRAL 신속중재규칙 최종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규칙의 도입 형식, 규칙 적용의 요건, 어떤 규정이 포함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논의에 진전이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73차 회의(2021년 3월 예정)에서 논의와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회의에서는 합의된 큰 틀 아래서 자구 수정 등 세부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초안의 각 규정 간에 모순이 없는지, UNCITRAL 중재규칙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규정으로 둘 내용인지 아니면 해설서로 두는 것으로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재절차에서 무리 없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 II. 제72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1. 신속중재규칙의 도입 방식

신속중재규칙을 새로운 내용으로 취급하여 그간의 UNCITRAL 중재규칙과는 별도의 규범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UNCITRAL 중재규칙의 부속서(Appendix)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부속서 형태로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신속중재규칙이 기존 UNCITRAL 중재규칙의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신속중재규칙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UNCITRAL 중재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규칙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 2. 제1조 적용범위

신속중재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지(Opt-in 안), 아니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분쟁 해결 합의만으로도 신속중재규칙이 자동 적용되는지(Opt-out안)에 대한 논의 결과, 대다수 회원국이 Opt-in안을 지지하면서 “신속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당

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신속중재절차 채택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재판정부도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인선정권자에게 잠정적인 결정 권한이 있음을 본문에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해설에 두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어 논의한 결과,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3. 제3조 신속중재절차 적용배제

초안 제3조의 제목의 “Non-application”에 관하여 본 조가 상정하는 상황은 신속중재규칙이 적용된 후 그 적용에서 벗어난 경우이므로, 적용이 배제된다는 표현보다는 적용이 중지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국이 이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신속중재가 개시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unexceptional circumstance)에는 중재판정부가 일반중재 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제2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결정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예외적 상황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3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중재절차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신속중재절차를 배제하려는 시도에 위 요소들이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고, 위 요소들을 규정 본문보다는 해설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무국이 여러 쟁점들을 다음 회기까지 반영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일반중재 전환 후에도 기존 신속절차의 중재판정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에 관한 제3항에 관해서는, “to the extent possible”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당 문구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하기로 합의되었다.

#### 4. 제4조 중재통지서 및 청구이유서

신청인은 중재통지서(Notice of Arbitration)와 청구이유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제4조), UNCITRAL 중재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이유서와 함께 모든 서류 및 증거들도 제출할 것이 요구되어 가혹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신속중재의 취지에 부합하고 각 조항은 유연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반론에 따라 원안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초안 제4조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다”는 문구(“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paragraphs 2 to 4,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등)가 들어가 있는데, 신속절차에서도 UNCITRAL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문구를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무국이 신속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규칙의 상호 연계를 고려하여 위 부분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 5. 제5조 중재통지서에 대한 응답 및 답변서

초안 제5조는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하고,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1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변서 제출기한의 기산점을 중재판정부 구성시로 하는 안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답변서 준비에 15일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6. 제6조 중재인선정권자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중재인선정권자를 지정하거나, 직접 중재인선정권자가 될 수 있는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다만 PCA가 기한 내 중재인 선정을 못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 제3항 내지 제7항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고 이 조항들이 신속중재에

도 적용되므로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

## 7. 제7조 중재인의 수 및 제8조 단독중재인의 선정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단독중재인 신청 가능 시점을 피신청인의 중재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도과 시(1안), 또는 모든 당사자가 중재통지서에 대한 응답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도과 시(2안)로 정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분명한 기준점을 필요하다는 이유로 1안이 지지를 얻었으나,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8. 제9조 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잠정 일정표 제공

초안 제9조는 중재판정부가 15일 내에 당사자들과 사건관리기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안에 따른 경우 사건관리기일에 대한 협의기간과 답변서 제출기간이 동시에 진행되어,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없이 사건관리기일이 열릴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 15일 내에 사건관리기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재인의 사건관리기일 운영에 답변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

는 중재통지서와 그에 대한 응답만 제출된 상태에서 해당 기일이 열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건관리기일 개최수단에 관해서는 “전화, 화상회의 기타 방법으로 사건관리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설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 9. 제10조 사건 일정 및 중재판정부 의 재량

초안 제10조는 중재판정부가 절차 단계별로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중재규칙 제17조 제2항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초안 제1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신속중재에 특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예를 들어 “중재판정부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6조의 판정 선고 기한을 초과하여 연장하지 못한다”)에서 원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됨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신 당사자 합의(agreed by the parties)에 의한 기한 단축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중재판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 10. 제11조 심리

초안 제11조는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심리기일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UNCITRAL 중재규칙 제17조 제3항 내용과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중재판정부에 심리기일을 개최하지 않을 권한이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격 또는 화상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사무국의 제안이 있었고, 대다수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였다. 다만 기존 UNCITRAL 중재규칙에는 원격 및 화상 심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신속중재규칙에만 이 같은 규정을 둘 경우, 반대해석상 일반중재절차에는 원격 또는 화상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 내용은 해설에 삽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11. 제14조 추가서면의 제출

초안 제14조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추가서면 제출을 제한(limit)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조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UNCITRAL 중재규칙 제24조가 이미

당사자의 추가서면 제출 가부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추가서면 제출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권한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반론도 존재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표현과 관련하여 “제한(limit)”이란 표현은 중재판정부에게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일종의 부담을 주어 그 권한을 약화시키며 UNCITRAL 중재규칙 제24조도 단순히 “결정(decid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한(limit)”이 아닌 “결정(decide)”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12. 제15조 증거

초안 제15조 제2항은 UNCITRAL 중재규칙 제27조와 내용상 유사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항을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속중재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13. 제16조 판정

신속중재의 실효성을 위해 판정이 일정 기한 내에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대다수 회원국이 동의하였고, 전체 기간(중재판정부 구성 시부터 판정 선고 시까지 9개월 또는 6개월), 연장 횟수(1회 또는 2회), 연장 가능한 기간(3개월 또는 6개월)에 대해 회원국별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간은 6개월로 두고, 기간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지지하였다. 전체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III. 평가 및 소감

제72차 회의에서는 신속중재규칙의 도입 방식과 적용범위 같은 큰 틀에 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재통지서 및 청구이유서(제4조), 중재인선정권자(제6조), 중재인의 수(제7조), 심리(제11조), 반대청구 및 청구 또는 방어의 수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신속중재절차 적용 배제(제3조), 사건 일정 및 중재판정부의 재량(제10조), 추가서면의 제출(제14조), 증거(제15조)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무국이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하였고, 중재통지서에 대한 응답 및 답변서(제5조), 단독중재인의 선정(제8

조), 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잠정 일정표 제공(제9조), 판정(제16조)은 추후 기한 및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 논의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잔여 쟁점이 기존 UNCITRAL 중재규칙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거나, 조문에 있는 내용을 해설로 옮기는 등의 입법기술적 문제라서 머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자체 신속중재절차를 마련하여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제시 및 반영할 수 있었고, 현재의 초안은 그간 우리나라가 제시한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논의는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의 투자분쟁 해결절차 개선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실무작업반의 논의가 상사중재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투자중재라도 UNCITRAL 중재규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사중재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신속중재규칙이 투자중재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2실무작업반

은 신속중재규칙 성안을 마무리한 후에 본  
작업반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신속중재규칙  
이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투자중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  
를 제3실무작업반과 공유할 예정이다.